

광주 교복업체 70%가 담합 수사선상...2학기부터 공급 차질

담합업체 최고 2년간 부정당업체 등록...입찰 참여 못해
 광주시교육청 TF 구성...입찰 상한가 낮추는 방안도 고려

광주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학기부터 교복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업체의 사전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기정 '교복 담합 근절 대책 TF'는 시교육청 교복담당자를 비롯해 중·고교 교장·행정실장,

학부모, 시의원, 교복업체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TF를 통해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규정을 한시적으로 타지역까지 허용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중·고교 교복은 각 학교가 교복 기초 금액(31만 원~35만 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교복 납품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입찰참여는 지역의 교복업체로 제한돼 있으며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최고 2년 동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실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키록 등을 압수했다.

광주에서 교복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으로 이 중 22곳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장 2학기부터 각 학교 교복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TF를 통해 '교복 입찰 상한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담합의혹이 있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대였지만 공정경쟁 추정학교는 10만원~20만원대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는 교복 기초금액 상한가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는 지난해 31만4612원에서 33만5843원, 전남은 31만4590원에서 33만5180원으로 오른다.

시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비롯해 학용품, 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의 가정에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담합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인상할 경우 담합업체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상한가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통해 사전 담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교육청 자체 규정을 만들고 교복업체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현행	주 52시간제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연장 근로 추가 선택지	① 월(1개월)	② 분기(3개월)	③ 반기(6개월)	④ 연(1년)
총량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하루 24시간-11시간(연속휴식 보장)-1.5시간(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11시간 30분
 11시간 30분 × 주6일(휴일 제외)=69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했다고 봤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 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예고 '11시간 연속휴식' 따라 최대 69·64시간 근로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규정...근로시간 저축도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임 등도 규정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행 제도로는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 규정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저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

는 제도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 밖에 단체 휴가, 시간단위 휴가,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